수과-4905
15.3.26.
]민공개

주무관	안전재난 관리담당	안전치수 과장	안전건설 교통국장	
김재운	최성연	윤석수	03/26 곽병한	
협 조				

- 2015년 상반기 -**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**

2015. 3.

안전건설교통국 안 전 치 수 과

- 2015년 상반기 -**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**

우리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등급을 재조정하고, 누락된 시설은 신규로 지정하며, 재난위험시설의 장·단기 해소계획을 수립·시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함.

I 추진 근거

- □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제27조 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)
 -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·관리 및 정비
- □ 『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』제31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)
 -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, 세부지정기준
- □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(국민 안전처, 안전점검과 -714, 2015.1.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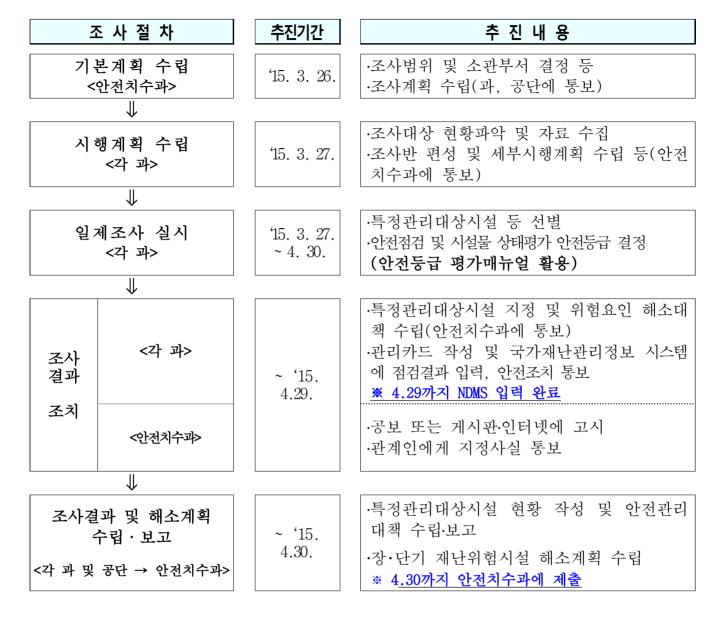
Ⅲ 일제조사 개요

- □ 조사기간 및 대상
 - 조사기간 : '15.3.27.~ 4.30.
 - ※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 내 추진완료
 - 조사기관 :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시설관리부서(19개부서)

건강정책과(1), 건축과(283), 교통지도과(1), 도로시설과(1), 도시계획과(3), 도시디자인과(10), 문화체육과(96), 보건위생과(10), 복지정책과(5), 사회적경제과(1), 안전치수과(1), 어르신복지과(12), 의약과(12), 일자리경제과(7), 자치행정과(19), 주거정비과(31), 주택관리과(120), 행정지원과(2), 환경과(47)

- 조사대상 : 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
 - ※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지침 【별표 1】에 해당하는 시설

□ 추진절차



□ 추진방법 : 재난관리부서와 시설관리부서 간 역할분담 추진

- 재난관리부서(안전치수과) :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 제조사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부서 통보, 조사결과 취합
- 시설관리부서(각 과) :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일 제조사
 - 자체 점검반 편성점검(직원 + 외부 전문가) 실시
 - ※ 외부 전문가 점검의 필요성 증대로 이후 과별 예산 편성 요망

□ 주요 점검사항

○ 구조분야(Hardware)

-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, 균열, 위험 여부
- 독극물 등 위험물질이 보관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
-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·장비 등의 설치·보유·운용 상태
- 안전 대진단과 연계, 시설 유형별 안전점검표에 따른 분석점검
- 공공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여부까지 확인 실시

○ 비구조분야(Software)

-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
- 부서소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
-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
- 부서소관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
- 제외대상 확인(삭제가 아닌 해제처리) 및 신규대상 시설 발굴, 안전등급 산정
- 관계법률 위반여부 확인, 안전상 손상 및 결함 요인 점검
- 이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

Ш

조사방법 및 유의사항

□ 조사반 구성

- 조사반 : 시설별 관리·감독부서
- 구성 : 해당분야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·점검 (필요시 안전관리자문단 활용)
 - ※ 전기·가스안전공사, 한국시설안전공단, 건축구조기술사회, 대학 소속 전문가 등 포함

□ 점검 방법

- 시설 유형별 해당항목 점검 (지침의 별표2 분0/별 안전점검기준 참조)
- 기존시설 점검시 : 분야별 육안점검
- 신규지정 시설물, 시설물 상태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: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적용
- 안전등급 평가매뉴얼」에 따라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(30%)·시설(70%) 영역 평가
 - ※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참조

□ 일제조사 유의사항

-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
- 지침 내 【별표2】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을 기준으로 점 검하되, <u>국가 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 각 부처별 시달된 해당</u> <u>시설별 안전점검표를 활용</u>하여 연계 점검 실시
- 지침 변경(2015.3.11.)으로 제외되는 대상도 조사대상(국가 대진 단 관련)이며, 변동사항을 점검후 NDMS에 반영(삭제 아닌 해제)
- 제외 및 추가대상 확인 철저(교량, 터널, 공공업무시설 규정 등)
 - ※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유의 (2015.2.11. 동작구 사당체육관 신출공사장 붕괴사고에서 특정관 리대상시설에 해당함에도 누락되어 안전점검 미실시 사례)
- 공공건축물(청사 등)의 경우 점검시 내진설계 분야까지 확인
- 구분사항 변경 등 변동사항 확인 및 현행화 철저
- 신규 허가·인가·등록 및 각종 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 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
 - 교량 등 도로시설은

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(http://bti.kict.re.kr) 또는 e-나라지표(www.index.go.kr) 등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지정

○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

-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하면서 참여·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동의서 작성·제출 독려
- 공동주택 안전관리자(주택관리사 등)가 교체된 경우 제도 참여, 시 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조치

○ 자료 수집

- 일제조사 시 시설물별로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지침」서 식 1에 따라 작성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에 입력
- ※ 첨부서류 : 위치도, 전경사진 및 위험부위 사진, 건축물대장 등



일제조사 결과조치

□ 공통

- 시설관리부서별 인사이동 등에 따른 재난관리시스템 권한 정비
 - 담당자 변경시 변경사항 보고요망
-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【별표3】
 - 중점관리시설(A·B·C급) 또는 재난위험시설(D·E급)로 지정
-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(NDMS) 조사결과 입력 및 현행화
 - 시설개요(준공년도, 구조, 면적 등), 위치도 및 사진, 장·단기 해소계획, 재난대비체계,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, 관리책임자 지정 등입력 및 현행화 철저
 - 지침개정(' 15.3.11)에 따른 대상 제외시설은 NDMS에서 '해제' 조치('삭제'금지)
 - 지침변동에 따른 구분 분야 변동시설(장례식장 등) 모두 정비
- 조사결과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반드시 소유자(관리자)에게 통보

□ 재난위험시설(D,E급)

- 안전등급평가 결과 D, E급 시설
 - 공공시설 :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
 - 민간시설 :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
-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·금지 등 응급조치
 - 공공시설 :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·보강 조치
 - 민간시설 :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(정밀안전진단의 실시, 보수· 보강 등 정비,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)
- 재난위험시설(D, E등급)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
 - 고시 : 재난위험시설 지정 또는 해제시 공보 또는 게시판, 인터넷 에 14일 이상 고시
 - 안내표지판 : 위험요소, 사용금지·제한내용, 재난관리책임기관,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
 - ☞ 단.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제외

Ⅴ 행 정 사 항

- 시설관리부서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(3.27.~ 4.29.)
- 조사결과 NDMS 입력(4.30.한)
- 붙임 1.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및 관리 지침 관련공문 3부.
 - 2. 성북구 안전관리자문단 명단(2015.01월) 1부.
 - 3. 시설 유형별 점검 체크리스트 1부.
 - 4.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(참고용) 1부. 끝.

【^{별표 1}】 <u>성북구 관내 시설물 유형별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</u>

(2015.03.23. 기준)

	등급별	총합		중점관	리시설		재미	난위험시	설
관리 부서		계	소계	А	В	С	소계	D	Е
	총합계	674	651	357	229	65	23	16	7
	건축물	624	602	326	215	61	22	15	7
	가스취급시설	19	19		19				
	공연시설	2	2	2					
	기타(건축물)	71	67	42	7	18	4	2	2
	노유자시설	15	15	13	2				
	대형건축공사장	3	0				3	3	
	대형건축물	39	39	37	2				
	대형광고물	10	10	10					
	대형숙박시설	12	12	3	9				
	아파트	60	59	4	43	12	1	1	
	연립주택	260	246	136	86	24	14	9	5
	운동시설	3	3	1	2				
	위락,휴게시설	2	2		1	1			
	의료시설	14	14	13	1				
	종교시설	81	81	51	30				
	지방공공청사	23	23	11	11	1			
	집회시설	3	3	3					
	판매시설	7	7		2	5			
	시설물	50	49	31	14	4	1	1	
	교량	5	5		5				
	기타(시설물)	36	35	29	4	2	1	1	
	육교	4	4	2	1	1			
	지하차도	4	4		4				
	축대,옹벽,석축	1	1			1			

【별표 2】

<u>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</u>

■ 시설물 분야

	구 분	대 상 범 위	비고	관리부서 (해당 시설수)
도	교 량	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-「도로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 -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		도로시설과 : 5
로 시 설	터 널	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의 터널 	특별시도 및 광 역시도 터널 제 외	
	육 교	∘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		도로시설과:4
	지하차도	∘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		도로시설과:4
	지하도상가	•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		
	스 키 장	∘ 전수관리 - 스키장 내 식도시설(리프트 등) 포함 < 삭제 , 삭도궤도로 분류 변경>		
	삭 도·궤 도	∘ 전수관리(관광시설 케이블카 등) ※ 스키장내 삭도시설(리프트 등) 포함	궤도운송법 적용 대상	
	유 원 시 설	• 전수관리(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)	관광진흥법 적용 대상	
토 목	대형공사장	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	착공계 접수시	
공사장	중단된 공사장	◦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	지정	
수 상 안 전		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※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·도선포함 (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·관리) 	유선 및 도선사 업법 적용대상(해수면 제외)	
시 설		•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	수상레저안전법	
	래프팅보트 시설	◦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	· 적용대상(해수면 제외)	
물	놀이 위험구역	< 삭 제 >		
기 타		· <mark>지방자치단체의 장</mark>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		건축과:1 도시계획과:1 안전치수과:1 주거정비과:1 환경과:28

[※]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.

■ 건축물 분야

구 분		분	대 상 범 위	종 류	비고							
공공	당공업무시설		∘ 연면적 1,000㎡이상의 <mark>지방자치단체</mark> 의 청사			건강정책과:1 사회적경제과:1 자치행정과:19 행정지원과:2						
공 동	0	파트	∘ 5층 이상 ~ 15층 이하		※다세대주택 제외	건축과:1 주택관리과:59						
공 동 택	연	립주택	∘ 연면적 660㎡초과, 4층 이하		※다세대주택 제외	건축과:184 주거정비과:16 주택관리과:60						
	판매시설 숙박시설	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7호가,나,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 (비디오·게임제공업 등)		일자리경제과:7						
			∘	일반숙박시설, 관광호텔, 휴양콘도미니엄, <mark>고시원</mark> 등		문화체육과:4 보건위생과:8						
	운	' 수시설	○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 ○「항만법」제2조제5호나,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 여객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고속·시외버스터미널, 여 객선터미널								
	집회	공연장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연회관, 음악당, 서어커스장 등		문화체육과:2						
중소형		및 집	및	및	및	및	및	집회장	○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예식장, 마권장외발매소, 회의장 등		건축과:3
건축물			관람장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경마장, 경륜장, 자동차 경기장 등							
	설	전시장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박람회장, 전시장, 박물관, 미술관 등								
	의료시설 장례식장	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 등		어르신복지과:2 의약과:12						
		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 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㎡ 이상 ~ 5,000㎡ 미 만	장례식장								
	종	교시설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 등		문화체육과:81						
	위	락시설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,바목에 따른 <mark>무도장, 무도학원, 카지노영업소</mark> 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무도장, 무도학원, 카지노 영업소		보건위생과:2						

구 분		대 상 범 위	종 류	비고	
	관광휴게시 설	∘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,라,마목에 따른 <mark>어린이회관</mark> , 관망탑, <mark>휴게소</mark> 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		
	수련시설	∘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,나,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수련관, 수련원, 유스호스텔		
중소형 건축물	노유자시설	∘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,나,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,000 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아동관련시설(어린이집, 아동 복지시설 등), 노인복지시설 (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), 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시설	※ 단독·공동 주택, 1종근린 생활시설 제외	복지정책과:5 어르신복지과:1 0
	운동시설	∘ 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,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체육관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 등		문화체육과:3
대형건축물		∘ 11층 이상 ~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의 건축물		** 건축법 제 2조 (건축물 용도) 제2항제 21호 및 제22 호 제외	건축과:32 교통지도과:1
대	형광고물	•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·폭 3m 이상(옥 상간판 등)			도 시 디 자 인 과:10
건 축	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	∘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,000㎡ 이 상 공사장		※ 착공계접수 즉시지정	주거정비과:3
	가 스 취급시설	· 충전소, 판매소, 제조소, 자역정압가 < 삭 제 >			
위험물 사 설	취급시설 유 독 물 취급시설	○ 유독물 보관저장소 < 삭 제 >		주기·상업·준 공업 - 지역 <mark>내 시설</mark>	환경과 : 19
	화학물질 취급시설	·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< 삭 제 >		1 11 11 2	
공단	일반공단	<u>• 전수관</u> 라 < 삭 제 > <u>• 전수관</u> 라 < 삭 제 >			
신 <u>종</u> 업종	<u> 농공단자</u> 번지점프장	• 전수관라 < 삭 제 > • 전수관라 < 삭 제, 기타로 분류 변경 >			
-	기 타	○ <mark>지방자치단체의 장</mark>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	번지점프장, 짚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, 단독주택, 소 규모 공동주택 등		주거정비과:1 (석축)

- ※ 공공업무시설, 공동주택, 중소형건축물,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
- ※ 연면적은 허가·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 한다.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
-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(11층 이상 ~ 16층 미만, 연면적 5,000㎡
 ~ 30,000㎡)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
- ※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.

【별표 3】

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

안전등급	상 태	평가(조치)기준
A등급	○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	○ 이상이 없는 시설
B등급	○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양호한 상태⇒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	○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
C등급	○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상태⇒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	○ 보수·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 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 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
D등급	○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(강재의 피로균열, 콘크리트의 전단균열, 침하 등)로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⇒ 긴급한 보수·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	○ 조속히 보수·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○ 보수·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○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
티O	○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 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 ⇒ 사용금지, 개축 등 필요	 ○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·보강하는 것보다 철거, 재 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○ 철거,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○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·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